#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59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박 정·송옥주·민병덕

안규백 · 임오경 · 강유정

어기구 · 소병훈 · 김남근

장경태 • 문금주 • 윤후덕

안태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 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 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4조).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75일)"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거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에 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u>는 120일)</u>-----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4) -----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u>우에는 75일)</u>은 유급으로 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경우에는 75일)-----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 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